

의안 번호	제3609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04월 08일 배강민, 김기남 의원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04월 14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04월 18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04월 18일

2. 개정이유

- 이 조례는 김포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,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학교체육시설 개방으로 대체·보완함으로써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지원절차 및 지원금 회수 등(안 제5조~제6조)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**부결**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주문사항

- 본 조례는 체육동호인조직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사용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특정 동호회에 형평성 및 특혜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으며 학교시설 개방의 문제는 학교와 교육청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부결함.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

김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김포시에 위치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체육시설”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라 김포시에 위치한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.
2. “사용료”란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3. “체육동호인조직”이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 조직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 등) ①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영리 목적의 스포츠교실이나 일회성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동호인조직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체육동호인조직의 구성원이 연간 상시적으로 20명 이상이어야 한다.

1.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80% 이상으로 구성된 체육동호인조직
2. 김포시체육회 및 김포시장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조직
3. 관내 기업 소속 체육동호인조직

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체육동호인조직이 균형 있게 사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지원기준)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, 실제 납부한 사용료의 50% 이내에서 지원한다.

② 학교체육시설을 최소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지원한다.

제5조(지원절차)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신청 기간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그 밖에 사용료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지원금 회수 등) ① 시장은 사용료 지원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,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.

②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학교로부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시장은 지원 비율에 따라 반환액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료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